고용노동부

보 도 자 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9. 7.(화) 석간 *인터넷 2021. 9. 7.(화) 08:00 이후 / 총 3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과 장 송유나 사무관 이재인	044-202-7190 044-202-719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국민취업지원제도,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.

–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(중위 60%이하) · 재산(4억원 이하) 요건 확대 –

□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%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**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 50만원×6개월)**도 받을 수 있다.

○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「**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**개정안**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.

시행령 개정내용

- ❶**소득요건**: (기존) **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** 50% 이하 → (개정) **60% 이하**
  * **'21년 1인 가구 기준 91.4만원 → 109.6만원, 4인 가구 기준 243.8만원 → 292.5만원**
- ❷**재산요건**: (기존) **가구 재산의 합계액이** 3억원 이하 → (개정) **4억원 이하**

<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>

◈ **국민취업지원제도(한국형 실업부조)**는 **고용보험 사각지대**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**취업취약계층**에게 **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**('21.1.1. 시행)

* Ⅰ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×6개월, 최대 300만원)
Ⅱ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 195.4만원)

** 코로나19 등 경제·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'20.5월 여야 합의로 법률 통과

- 9.1. 기준 **40.5만명 신청**('21년 추경 포함 64만명), **32.4만명**(Ⅰ유형 26.3만명, Ⅱ유형 6.1만명)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

*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문의 ☎1350)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(www.work.go.kr/kua)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은 **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**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

○ ①**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**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**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,** ②**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**한 것이다.

* '19.3월 경사노위 합의사항: 중위소득 50% 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, 단계적으로 확대

○ 또한, 앞으로는 **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**이면서 **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**도 취업지원*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, **신속한 구직활동 지원**이 가능해졌다.

* 종전: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 제한

○ 아울러, **질병·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**에도 **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**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*를 확대하여, **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**했다.

* 종전: 천재지변,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 못한 경우로 한정

그간 주요 제도개선 사항

❶ (7.27.) **청년(18~34세, 중위소득120%↓& 재산4억원↓)은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에도** Ⅰ유형 취업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(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)

❷ (7.1.) **청년** 재산요건 확대(3억→ 4억), **영세자영업자** 취업지원 확대(연 매출 1.5억→ 3억) 등

❸ (3.29.) **보호종료아동 및 구직단념청년** 참여요건 확대, **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종사자** 지원

❹ 참여자의 **구직활동 실질화**를 위한 안내, 담당자 교육 관련 지침 시달·운영 등

□ **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**은 "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, 저소득 구직자 등 **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**할 계획이다"라며,

○ "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**제도개선 사항을 발굴**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**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**하겠다"라고 밝혔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사무관(☎044-202-719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| **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인포그래픽**

